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제 운영시간 확대 요청

### □ 신청 취지

- 「수원시 자전거전용차로 지정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운영 고시」에 따른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차량 시민 신고시간이 특별한 이유 없이 07시부터 21시로 제한되어 있는 바, 시민 신고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요청한다.

###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법규 위반 차량 시민 신고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게 되면 무분별한 신고(보복성 신고 등)로 주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며, 야간시간(21시~07시)에 촬영된 증빙자료의 경우 위반사실 입증판단이 어려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 위 사항을 전제로 당시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인 서울시의 운영기준(신고시간 : 07시~21시)을 참고하였고 서울시 외 타 지자체의 단속 규정이 없으므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신고시간을 07시~21시로 지정하였으며 시행 초기 단계인 현재는 신고시간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 □ 사실관계

- 민원인은 자전거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주장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피민원인에게 제기하였고, 피민원인은 지난 2021. 9. 16. '수원시 자전거전용차로 지정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예고'를 공고(수원시 공고 제2021-2057호) 하였으며, 이 민원 행정예고의 내용에는 "1. 자전거 전용차로 지정구간 1) 시행구간 2) 시행기간 : 자전거전용차로 폐지일까지 3) 시행시간 : 24시간, 2. 통행의 방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에 따라 자전거 이외의 차량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등)은 통행할 수 없음. 3. 지정의 이유 : 자전거 이용자 안전확보 및 교통질서 개선 4. 과태료 부과 및 단속 시간 1)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3호에 의해 승합자동차 등 6만원, 승용자동차 등 5만 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 2) 단속시간 • 시민신고 : 07~21시, • 고정형 CCTV단속: 07~22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 민원인은 이 민원 행정예고에 기재되어 있는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처/수원시 교통정책과, 2) 의견제출방법/우편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1(2층 교통정책과)"라는 내용에 따라 "시민신고 : 07~21시" 부분에 대해 21시 이후에도 시민신고가 가능하게 해 달라며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민원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2021. 10. 29. '수원시 자전거전용차로 지정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운영' 고시(수원시 고시 제 2021-388호, 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를 하여 이 민원 지침을 확정하였다.

## □ 관계 법령 등

- 「수원시 자전거전용차로 지정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운영 고시」

## □ 판단 및 결론

- 관련 자료와 부서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시간 등은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피민원인이 시민 신고시간을 07시부터 21시로 지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자전거전용차로 시행시간은 24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시민 신고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 제한을 두고 있어 운영시간과 신고시간이 상이하여 자전거전용차로 이용 시민과 전용차로 위반 신고를 하는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 시민 신고시간에 제한을 두면 신고시간 이외에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 신고시간 이외에 자전거 등이 이동할 때 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예상되고 사고 발생의 경우 지자체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표출될 수 있는 점,
- 현재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sup>1)</sup>에 대하여는 시민 신고시간을 이미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자전거전용차로 시민 신고시간을 24시간 운영할 행정적 제반사항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시민 신고 시간도 24시간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피민원인에게 ‘의견표명’ 한다.

---

1)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 :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광교호수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장소 등 확대 요청

□ 신청 취지

- 광교호수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장소 등이 시민 수요 및 타 지자체 공원과 비교하여 부족하니, 보호수목지역과 산책로를 제외한 휴식공간에 일조시간에 한하여 특정크기 이하의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그늘막 설치 허용장소 등 확대를 요청한다.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공원녹지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발간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12장(공원이용자 준수사항 및 행위금지)에 따르면 취사나 숙박은 하지 않고 주간에만 그늘막을 설치·이용하는 경우도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공원 이용에 지장을 준다면 「공원녹지법」에 따라 금지되는 야영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 공원관리과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공원이용보장 및 수목의 생육 보존 등을 우선으로 하여 광교호수공원 내 그늘막 및 텐트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여름철 수경시설 운영 시 아이들의 탈의 및 보호자들의 편의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시민의 공원이용 및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경시설 부근에 그늘막 및 텐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 민원인이 주장하는 서울시의 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장소 등

확대와 관련하여 공원관리과는 서울시 또한 대부분의 공원에 그늘막 및 텐트 설치 불가함을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담당부서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민원인이 비교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한강시민공원은 광교호수공원과 같이 특정기간 및 장소를 정하여 제한적으로 텐트 및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서울숲의 경우 연중 모든 장소에 대하여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여도 광교호수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장소 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광교호수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으로 인한 공원 내 배달 음식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배달 이륜차 진입, 음식점 불법 광고물 부착, 그늘막 이용자의 폐기물 투기 문제 발생과 그늘막 내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등의 발생이 매우 우려되며 그에 따른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부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 15시경 광교호수공원을 방문하여 다소 인적이 드문 신대호수 남단 큰나무정원에 사방이 개방된 소형 간이텐트(그늘막)와 돛자리를 설치하였으나 공원관리 직원의 공원 내 그늘막 설치가 불가하다는 계도를 받아 철수하였다.
- 이에 민원인은 수원시를 상대로 광교호수공원 내 그늘막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3번에 걸쳐 제기하였고, 관련부서는 광교호수공원 내 그늘막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하절기(6월~9월) 수경시설 가동 시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지정된 장소에 한시적으로 텐트 및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을 민원인에게 답변하였다.
- 관련부서가 민원 답변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공원녹지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에 따르면 「공원녹지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12장(공원이용자 준수 사항 및 행위금지)의 내용에는 “질의내용 : 「공원녹지법」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늘막(소형 텐트)을 이용하되 취사나 숙박은 하지 않고 주간에만 이용한 후 그늘막을 수거하는 가는 경우에도 이를 야영행위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취사 및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그늘막 설치로 인해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공원 이용에 지장을 준다면 이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민원인이 주장한 서울 한강시민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안내’ 내용에는 “허용기간 : 2022. 4. 18.(월) ~ 10. 31.(월)까지 / 허용장소 : 한강공원 내 13개 그늘막 허용구역”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민원인이 광교호수공원을 방문한 2022년 5월 5일에 서울 한강시민공원은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이었고 광교호수공원은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이 아니었으며 민원인이 광교호수공원 내 그늘막 설치하였던 장소는 ‘큰나무 정원’이고 이곳은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는 장소로 지정되지 않아 설치 허용 기간이라 하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이다.

## □ 관계 법령 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국토교통부)

## □ 판단 및 결론

- 관련자료와 부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그늘막을 설치하였을 당시 장소가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공터였던 점, 민원인은 어린이날 자녀들과 함께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던 점, 민원이 발생한 5월 5일 어린이날 15시경을 기준으로 서울 한강시민공원은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이 관련부서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함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 「공원녹지법」 상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2018년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구역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을 살펴보면 그늘막 설치로 인해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공원 이용에 지장을 준다면 이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관련 법령 취지상 그늘막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 관련부서에서 명확한 그늘막 설치 허용 목적 없이 허용장소 등을 확대할 경우 공원 이용객이 허용 한도를 오인하여 실제 텐트를 설치하고 야영행위를 하는 등의 위법 사항 발생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공원 이용객 간의 마찰과 공원 관리 인력과의 마찰 발생이 우려되는 점,
- 그늘막 설치 허용으로 인한 배달 음식 수요 증가에 따른 이륜차 진입, 불법광고물 부착 및 그늘막 이용자의 폐기물 투기, 그늘막 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발생이 우려되며 그에 따른 반대급부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련부서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하되, 시민 수요를 감안하여 광교호수공원 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시설물 등의 확충을 검토할 것을 관련부서에 ‘의견표명’ 한다.